

석재채취업 등록증

- 등록번호: - (연도표시 - 일련번호)
- 석재채취 용도:
- 상호(법인명):
- 성명(대표자):
- 사무소 소재지: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
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(뒤쪽)

변경사항			
변경연월일	변경구분	변경내용	기록연월일 ·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
행정처분 사항 (등록취소 · 영업정지)			
처분내용	사유	처분기관 (처분일)	기록일 및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